

예산총칙

2013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76,696,804	11,300,904
일반회계	328,397,405	9,851,922
특별회계	48,299,399	1,448,982
공기업특별회계	39,692,042	1,190,761
상수도공기업	14,425,075	432,752
하수도공기업	25,266,967	758,009
기타특별회계	8,607,357	258,221
주택사업	1,576,884	47,30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860,727	25,822
의료급여기금운영	843,769	25,313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594,171	17,825
공영개발사업	431,358	12,941
농공지구조성사업	3,007,000	90,210
기반시설	13,356	401
장기미집행	506,461	15,194
수질개선	773,631	23,20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 행위 사업은 별첨 "채무부담 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794,808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9,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